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1.28(화) 16:00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3. 제안 이유

- 2015년 1월 1일자로 ‘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’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,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’ 중 [별지 제1호 서식] 결재란의 ‘부장’을 ‘국장’으로 변경함은 물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가 유기농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‘기술지원부장’ ⇒ ‘기술지원국장’, ‘농산지원과장’ ⇒ ‘유기농산과장’으로 개정(안 제5조)
- 나.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’ 중 [별지 제1호 서식] 결재란의 ‘부장’을 ‘국장’으로 변경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를 국장으로 변경하고, 농정국의 농산지원과가 유기농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